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상훈 · 김은혜
김재섭 · 김태호 · 박성민
이만희 · 김소희 · 진종오
강민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·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,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,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4항)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4항 중 “소음 방지를”을 “소음[충간소음 및 벽간소음 등 인접한 가구·세대 등 간의 소음(대각선에 위치한 가구·세대 등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] 방지를”로, “바에”를 “경계벽·바닥의 충격 차단 성능기준을 포함한 설치기준 등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 ① ~ ③ (생략)	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·세대 등 간 <u>소음</u>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<u>바에</u>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소음[충간소음 및 벽간소음 등 인접한 가구·세대 등 간의 소음(대각선에 위치한 가구·세대 등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]</u> 방지를----- ----- <u>경계벽·바닥의 충격차단 성능기준을 포함한 설치기준</u> 등에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